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관세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부산세관 협업검사센터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2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, 하부조직의 기능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9. 8. ~ 9. 1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제20호 중 “정기 수입세액 정산제 등 자율심사”를 “자율심사”로 하며, 제12조제16항제19호 중 “정기 수입세액 정산제 등 자율심사”를 “자율심사”로 한다.

별표 4의2 중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“15”를 “12”로 하고, 기록연구사 1 다음에 “사무운영서기보 3”를 신설하고, 별표 8 중 위생서기보 “21”을 “20”으로 하고, 조리서기보 “11”을 “12”로 하고, 별표 8의2 중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“15”를 “12”로 하고, 관세서기 “984”를 “987”로 하며, 위생서기보 “21”을 “20”으로 하고, 조리서기보 “11”을 “12”로 한다.

별표 10 제2호가목1)의 평가기간란 중 “2022년 9월 30일”을 “2024년 9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심사국) ① · ② (생 략)	제5조(심사국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③ ----- -----.
1. ~ 19. (생 략)	1. ~ 19. (현행과 같음)
20. <u>정기 수입세액 정산제 등 자율심사</u> 관련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	20. <u>자율심사</u> ----- ----- -----
21. (생 략)	21. (현행과 같음)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2조(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) ① ~ ⑮ (생 략)	제12조(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) ① ~ ⑮ (현행과 같음)
<16> 심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----- -----.
1. ~ 18. (생 략)	1. ~ 18. (현행과 같음)
19. <u>정기 수입세액 정산제 등 자율심사</u> 에 관한 사항	19. <u>자율심사</u> ----- -----
20. (생 략)	20. (현행과 같음)
⑰ ~ ⑳ (생 략)	⑰ ~ ㉔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4의2]

관세청 공무원 정원표(제33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	<u>15</u>	<u>12</u>	-3
·	·	·	
·	·	·	
<u>사무운영서기보</u>	<u><신 설></u>	<u>3</u>	+3
·	·	·	
·	·	·	

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8]

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(제34조제4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위생서기보	<u>21</u>	<u>20</u>	-1
조리서기보	<u>11</u>	<u>12</u>	+1
·	·	·	
·	·	·	

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8의2]

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(제34조제4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	<u>15</u>	<u>12</u>	-3
·	·	·	
·	·	·	
관세서기	<u>984</u>	<u>987</u>	+3
·	·	·	
·	·	·	
위생서기보	<u>21</u>	<u>20</u>	-1
조리서기보	<u>11</u>	<u>12</u>	+1
·	·	·	
·	·	·	